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고용보험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임신 11주 이내 유산·사산한 근로자의 휴가 기간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됨에 따라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도 형평성을 고려하여 유산·사산급여 지급기간 확대 필요

3. 주요내용

가. 예술인 유산·사산급여 지급기간 확대(안 제104조의9)

예술인이 임신기간 11주 이내에 유산·사산한 경우 현행 5일에서 10일로 급여 지급기간 확대

* 노무제공자는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 규정을 준용하므로 예술인 규정만 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9제2항제2호가목 중 “11주”를 “15주”로, “5일”을 “10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9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예술인부터 적용한다.

제3조(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9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제104조의16제2항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노무제공자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4조의9(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① (생략)	제104조의9(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②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예술인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간	2. ----- ----- ----- -----
가. 임신기간이 <u>11주</u>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u>5일</u>	가. ----- <u>15주</u> ----- ----- ---- <u>10일</u>
나. 임신기간이 <u>12주 이상 15주</u>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u>10일</u>	<삭 제>
다. ~ 마. (생 략)	다. ~ 마.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7478